

국제법평론회 논문기고 규정

2004년 7월 7일 채택

2010년 2월 4일 개정

2017년 4월 29일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법평론』 및 본회 발행의 제반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작성요령과 기타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원고제출) ① 원고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미 발간된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아니어야 한다

② 원고는 본 규정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고는 수선 또는 보완을 위하여 기고자에게 반송된다.

③ 원고 기고자는 국제법평론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고를 전자메일로 본회 출판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위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고 기고자는 원고 표지에 논문제목(한글, 한자, 영문), 기고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지위, 주소(직장주소 또는 자택주소), 연락전화번호, E-mail주소를 명기 한다. 단, 원고 본문에는 기고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제 3 조(원고작성) 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상 15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의 문서규격은 A4용지 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30, 글자 모양 신명조, 글자 크기 10포인트, 행간 160%로 한다.

④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원고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 1. …, 1) …, (1) …, ① …” 등의 순서로 사용한다

⑥ 원고의 각주는 보 규정에서 정한 토의되어야 한다

⑦ 원고의 본문 다음에는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과 5개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작성한다. 다만, 원고의 본문이 영문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제목 및 국문초록과 5개 이내의 영문 및 국문 주제어를 작성한다. 영문초록의 적정 길이는 300단어 내외이고, 국문초록의 적정 길이는 400단어 내외이다.

제4조(각주 작성)

① 필자 표기

가. 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첫 인용시에 모든 필자를 표기하며, 반복 인용시에는 대표필자 일인만 표기한다.

[예, Ian Brownlie, Malcolm N. Shaw & Peter Malanczuk, …]

[예, Ian Brownlie, etc., …]

나. 기관 저자의 경우에는 기관명을 표기한다.

[예, 국제법평론회 편, 『국제법』(국제서점, 2010), 20면]

다. 필자의 영문표기는 이름(First Name)을 먼저 표기하고 성(Last Name)을 표기한다.

[예, Ian Brownlie, …]

② 문현명 표기

가. 국문의 경우에는 전체 책명은 『 』로, 논문이나 책의 일부로 발표된 글은 “ ”로 표기한다.

[예, 이순신, “임진왜란의 현대국제법적 해석,” 『국제법의 이해』(서울: 지구출판사, 2001), 120면]

나. 영문의 경우에는 전체 책명은 이탤릭체로, 논문이나 책의 일부로 발표된 글은 “ ”로 표기한다.

[예, Malcolm N. Shaw, “A Practical Look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Malcolm Evans(ed.),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1998), p.138]

③ 발행연월일 표기

가. 저서, 단행본 또는 연간간행물의 경우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나. 연 2회 이상의 정기간행물의 경우 권, 호 및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이순신, “해양법의 미래,” 『아시아해양법』, 14권 2호(2001), 38면]

[예, Pieter Jan Kuijper, “The new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Vol. 29, No. 6(1995), p.51]

다. 주간지 또는 일간지의 경우 발행연월일을 표기한다.

④ 학위논문 표기

가.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대학명 및 학위수여 연도를 표기한다.

[예, 장보고, 『공해의 국제법상 지위』(박사학위논문, 청해대학교, 1999), 130면]

⑤ 반복인용 표기

가. 국문의 경우 ‘앞의 주’로 표기한다.

[예, 이순신, 앞의 주 30), 150면]

나. 영문의 경우 *supra note*로 표기한다.

[예, Ian Brownlie, *supra note* 10, p.130]

다. 직전에 인용한 문헌의 경우 '위의 주' 또는 'Ibid.'로 표기한다.

⑥ 자료 표기

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공식인용지침에 따른다.

[예,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Judgement, I.C.J. Reports 1984*, p.299]

나. 국제법위원회 연감

[예,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Vol. II, part I, pp.104-105]

다. 헤이그아카데미 강의록

[예, Christian Tomuschat, "International Law: Ensuring the Survival of Mankind on the Eve of a New Century," *Recueil des Cours de l'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Vol. 281(or 1999-III), p.140]

라. WTO 자료: 사건명 또는 문서명, 문서번호, 절 또는 페이지, 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반복인용의 경우 사건명 또는 문서명과 절 또는 페이지를 표기한다.

[예, Panel Report on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R, WT/DS10/R, WT/DS11/R, para. 5.7.(11 July 1996)]

[예, AB Report on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 and Conventional Gasoline, para. 3.5.]

마. 기타 자료: 공식인용지침에 따르되 지침이 없는 경우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발행연월일),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바. 게재할 表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사.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서 밝힌다.

아. 참고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제 5 조(저작권) ① 본회가 발간한 『국제법평론』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② 『국제법평론』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한 편집저작권은 본회에 있다.

③ 『국제법평론』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 논문 등의 필자에게 있다.

④ 『국제법평론』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는 게재 신청을 함으로써 본회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게재 논문 등을 복제, 출판, 공중전송, 배포 등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본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